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 중 "위험 국가"를 "위험국가"로 한다.

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"를 "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"로, "요청하는 경우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"를 "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,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"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"

제72조제2항제5호 중 "대표사무소의"를 "대표사무소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특별 주의의무 등) ① 금	제70조(특별 주의의무 등) ①
융회사등은 FATF 지정 <u>위험</u>	<u>위험</u>
<u>국가</u> 의 고객(개인, 법인, 금융회	<u>국가</u>
사등)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	
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대응조치) ① (생 략)	제72조(대응조치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	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
<u>원장이</u>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	가의 위험에 상응하여
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(FAT	
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	
포함한다)를 취하도록 <u>요청하는</u>	금융회사
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	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
<u><후단 신설></u>	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
	한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	5
회사등이 자회사, 지점 또는	
<u>대표사무소의</u> 설립하는 것을	<u>대표사무소를</u>
제한	
6. • 7. (생 략)	6.•7. (현행과 같음)